

의 정 정 보

2005 - 12 6. 30

목 차

I. 국회통과 새법령	1
II. 타 시·도 의회동향	8

I. 국회통과 새 법령

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시행 '06.1.1)

○ 개정이유

- 지방의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 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주요내용

-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함
-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

②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날부터 시행)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 신문 사업자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에 포함시키고, 인터넷언론사에게도 정당의 정강·정책 등에 대한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하도록 함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공정여부를 조사하고, 그 보도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을 명하도록 함
- 선거부정감시단은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3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
- 선거권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함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2인 이상 4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하고, 그 시·도별 의원 총정수를 별표 3으로 정하도록 하며,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함
-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을 수요일로 변경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과 마찬가지로 선거일, 선거일의 전일 및 다음날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하도록 함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의 경우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신고범위를 대폭 확대함
- 선거인명부의 통·리별 공람 대신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당해 구·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등재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같이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며, 위반시 등록무효사유로는 보지 아니하도록 함
- 선거권자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후보자로 추천함에 있어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게 한 후 추가·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세 등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는 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그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 소득세증

명서는 그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에 관한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 중 신고된 1인)는 명함을 교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중에서 지정한 1인은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가 인쇄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의 등록과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시기를 일치시키도록 하고, 대통령선거는 선거일전 240일,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전 120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과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선거는 10인, 시·도지사선거는 5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3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2인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 후보자정보공개 자료를 게재하여 제출하도록 함

- 후보자는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 자치단체장선거에서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와 그 배우자(또는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관계자는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 국회의원선거는 20인,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0인, 시·도의원선거는 5인,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3인까지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2인을 연설원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서는 선거연락소마다 2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확장장치는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자는 당일에는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함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도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에게도 별도의 대담·토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초청받은 후보자가 불참시 대담·토론회 직전에 방송으로 고지하도록 함
-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글은 삭제하도록 함

- 인터넷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언론사명·광고기간·광고비용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함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적법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비용 등 선거비용 보전제외 대상을 명시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하도록 함
- 법원공무원, 교직원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집계사무를 담당할 개표사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에 임기만료일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 동시선거에 있어서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도록 함
- 국외부재자는 선거기간개시일전 5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 25일까지 공관장 또는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기간개시일전 25일부터 5일이내에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국외부재자 투표는 국외부재자신고인이 후보자의 성명이나 소속정당명 또는 기호를 직접 쓰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함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지역구 : 636)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충청남도의회의원(지역구 : 34)	
천안시 제1선거구	1.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원성동, 원성2동, 청룡동
천안시 제2선거구	2. 중앙동, 문성동, 봉명동, 신용동, 신안동
천안시 제3선거구	3.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부성동
천안시 제4선거구	4. 성정1동, 성정2동,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공주시 제1선거구	5.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중학동, 산성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공주시 제2선거구	6. 유구읍, 장기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평면, 신관동
보령시 제1선거구	7.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대천1동, 대천2동
보령시 제2선거구	8. 웅천읍,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대천3동, 대천4동, 대천5동
아산시 제1선거구	9. 염치읍,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아산시 제2선거구	10. 송악면, 배방면,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
서산시 제1선거구	11. 대산읍,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지곡면, 성연면, 부춘동, 석남동
서산시 제2선거구	12.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동문동, 활성동, 수석동
논산시 제1선거구	13.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취암동, 부창동
논산시 제2선거구	14. 강경읍, 연무읍, 연산면, 채운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계룡시 제1선거구	15. 두마면
계룡시 제2선거구	16. 남선면, 금암동
금산군 제1선거구	17. 금산읍, 부리면, 남일면, 남이면
금산군 제2선거구	18. 금성면, 제원면, 군북면,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연기군 제1선거구	19. 조치원읍, 동면, 전동면
연기군 제2선거구	20. 서면, 남면, 금남면, 전의면, 소정면
부여군 제1선거구	21. 부여읍, 규암면, 은산면, 석성면, 초촌면
부여군 제2선거구	22. 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 충화면, 양화면, 임천면, 장암면, 세도면
서천군 제1선거구	23. 장항읍, 마서면, 화양면, 기산면, 한산면, 마산면
서천군 제2선거구	24. 서천읍, 시초면, 문산면, 판교면, 종천면, 비인면, 서면
청양군 제1선거구	25. 청양읍, 운곡면, 대치면, 화성면, 비봉면
청양군 제2선거구	26. 정산면, 목면, 청남면, 장평면, 남양면
홍성군 제1선거구	27. 홍성읍, 홍북면, 금마면, 갈산면, 구항면
홍성군 제2선거구	28. 광천읍,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예산군 제1선거구	29.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예산군 제2선거구	30. 삼교읍, 대흥면,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
태안군 제1선거구	31. 태안읍,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태안군 제2선거구	32. 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당진군 제1선거구	33. 당진읍, 고대면, 석문면, 대호지면, 정미면, 송산면
당진군 제2선거구	34. 합덕읍,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신평면, 송악면

[별표 3]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2,922명)

시 도	총정수
서울특별시	419
부산광역시	182
대구광역시	116
인천광역시	112
광주광역시	68
대전광역시	63
울산광역시	50
경 기 도	417
강 원 도	169
충청북도	131
충청남도	178
전라북도	197
전라남도	243
경상북도	284
경상남도	259
제 주 도	34

II. 타 시·도 의회동향

① 인천시의회, 의회사무처 전입희망 공무원 공개추천제 실시

- 인천광역시의회는 금년 하반기 인사부터 의회사무처 전입 희망 공무원에 대해 공개 추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 6급이하 일반직 중 의회사무처 인사요인 발생시 전자게시판에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근무희망자를 신청 접수한 후
 - 전입 심사위원회(사무처장, 총무·의사담당관, 운영전문위원)의 심사를 거쳐 의장에게 전입인원의 2배수를 추천, 의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하므로서 인사발령하게 된다.
- 공개추천제 인사를 실시하므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의회사무처 위상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② 제주도의회, 의회 개회식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범위 축소

- 제주도의회는 6월 정례회부터 정례회·임시회의 개회식 및 본회의에 업무와 관계없이 관례적으로 참석하는 간부공무원에 대해 참석을 제외하기로 했다.
-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지사·교육감이 참석할 경우 부지사·부교육감은 참석을 제외하고, 간부공무원은 도 및 교육청 본청에 근무하는 실·국장으로 축소시켰다.
- 다만, 당해 회기의 안전과 관련된 간부는 본회의에 참석키로 했다.

③ 인천시의회,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명발표

- 인천광역시의회는 정부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에 따른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인천이 소외된 만큼 배려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 또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논리에 의한 지역적 정서를 무시한 일방적인 공공기관 이전 발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는 인천을 중국 푸둥지역에 버금가는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 특히, 각종 수도권 규제가 인천의 공공기관, 대학교, 기업체, 대기업 등의 유치에 결정적인 걸림돌이라며, 앞으로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저지를 위한 투쟁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주장했다.

④ 인천시의회, 대북교류협력기금 30억원 승인

- 인천시의회는 지난 6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가 대북사업 지원을 위해 요청한 3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 시의회가 이번에 승인한 30억원 중 20억원은 시가 북측민족화해협의회와 약속한 도로포장용 자재와 페인트 지원 등 대북경제 교류지원비로 사용되며, 나머지 10억원은 남북문화·예술·체육기금으로 활용된다.
- 시는 대북경제교류지원비 마련을 계기로 제16회 인천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05.9.1~9.4)북한선수·임원단을 파견, 2014년에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인천-평양 공동유치 등의 대북사업을 벌이게 된다. 시는 총 20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개성·개풍공단, 남포항 현대화사업 등을 함께 벌일 계획이다.